







충북경영자총협회는

충북지역의 사용자들에게 노동관계의 조정과 지원, 정부의 노동정책 및 노동관계법 제·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 개진 및 노사문제에 있어서 한국노총의 카운터 파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기업발전을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사관계 지원사업', '노사협력 증진사업', '회원사업 및 노사협력 사업',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홍보 및 출판사업'등이 있습니다.

2022년지원금

- 1. 청년내일채움공제
- 2.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4. 충북청년미래뉴딜산업전략프로젝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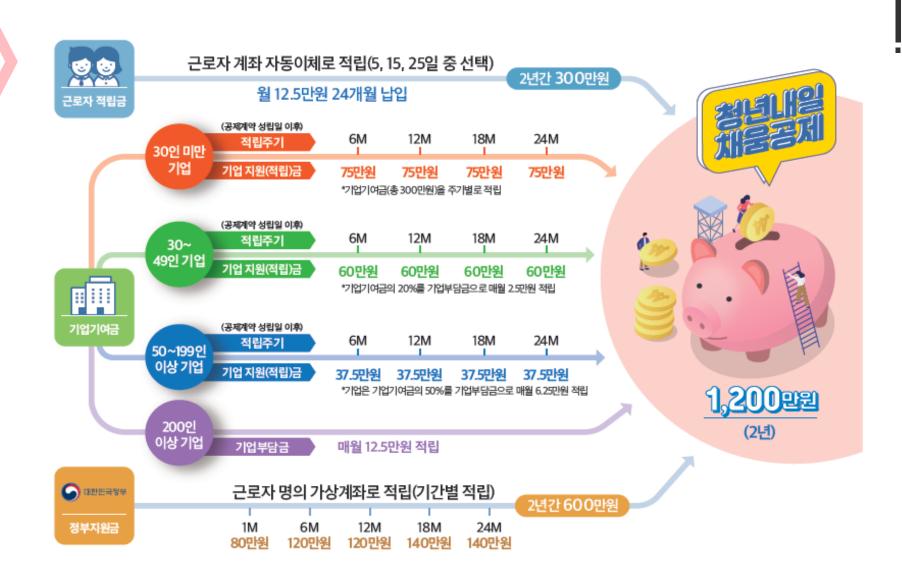
만 15세~만 34세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1,2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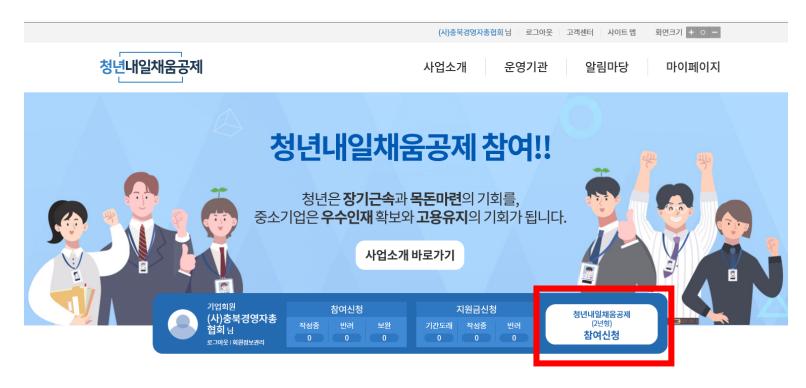
2022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1. 기업 온라인 신청
- 2. 운영기관: 충북경영자총협회
- 3. 기업 승인
- 4. 청년 온라인 신청
- 5. 자격심사
- 6. 서류접수
- 7. 협약체결
- 8. 청약신청
- 9. 청약승인
- 10. 공제금 적립
- 11. 만기금 수령

워크넷-청년공제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 승인 후 청년 신청 가능



운영기관 찾기



구 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재직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6개월이상 재직중인 만 34세이하 청년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배출 중소(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근로자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만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가입기간	5년~10년	5년	3년	2년
납입비율	핵심인력:기업=1:2(이상)	청년재직자:기업:정부= 월12만(5년):월20만(5년):월30 만(3년)	만기근로자:기업=1:1 각각 월14만원씩 정액적립	청년(1):기업(1):정부(2)= 300만원:300만원:600만원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5년간 3,000만원 이상	3년간 1,008만원	2년간 1,200만원
기타사항	청년공제 만기자가 6개월 이내 연계가입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시 400만원의 축하금 추가지급		 청년공제 만기자가 만기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 만기 후 기간 제한없이 가입가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만 34세 청년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5년간 근속 시 3,0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청년근로자 명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

•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중소기업 명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

▷세제혜택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적립

(단위:만원)

적립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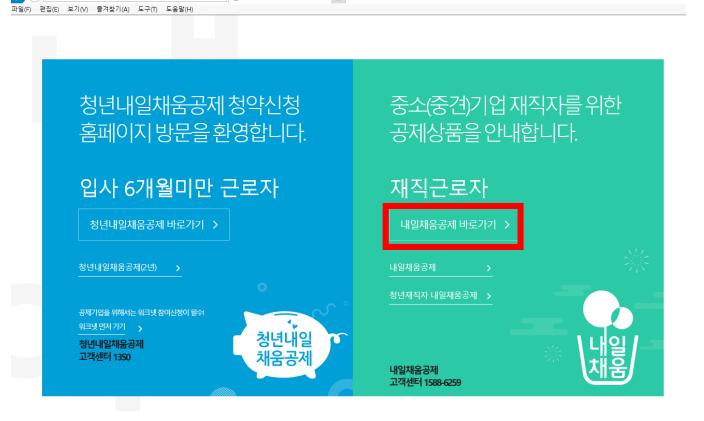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인 입	720	매월 12 x 60개월 = 720							
기업 납입	1,200	매월 20 x 60개월 = 1,200							
정부 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위탁판매기관 "충북경영자총협회" 선택

- 1. 중진공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2. 기업 청약 신청
- 3. 위탁판매기관 : 충북경영자총협회 선택!
- 4. 청년 청약 신청
- 5. 최종제출
- 6. 승인
- 7. 최초 납입 후 공제계약 성립
- 8. 계약성립 이후 공제금 적립
- 9. 만기금 수령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기업에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96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01 Q

기업 신청 및 심사

- 1. 관할 고용센터 내 사업장
- 2.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3. 5인 미만: 미래유망기업,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특례 가능

02

협약체결

지원적격 심사 후 운영기관과 사업장 간의 협약체결 (최초 1회 원칙) 03

청년 채용

- 1. 채용일 기준 만 15세~만 34세
- 2. 6개월 이상 장기실업청년 단,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등은 6개월 미만 이어도 가능

04

고용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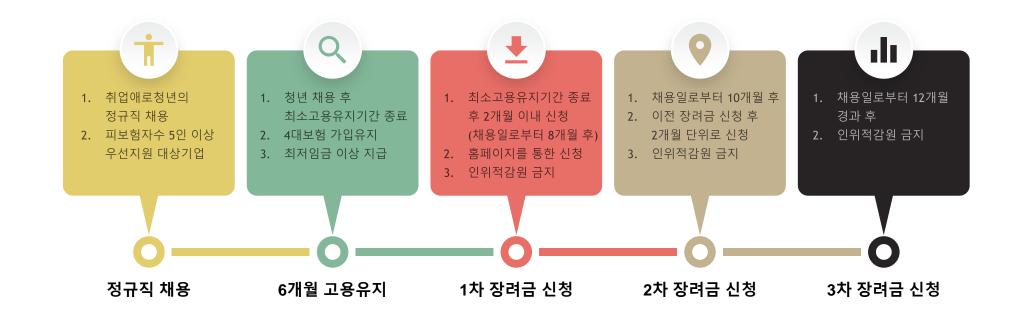
- 1. 정규직 근로자
- 2.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3. 최저임금(1,914,440원)이상 급여지급
- 4.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5. 4대 보험 필수 가입

05

지원금 수령

- 1.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
- 2. 80만원 x 12개월(최대)
- 3.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한도 (최대 30명)
- 4. 인위적 감원 시 지원 종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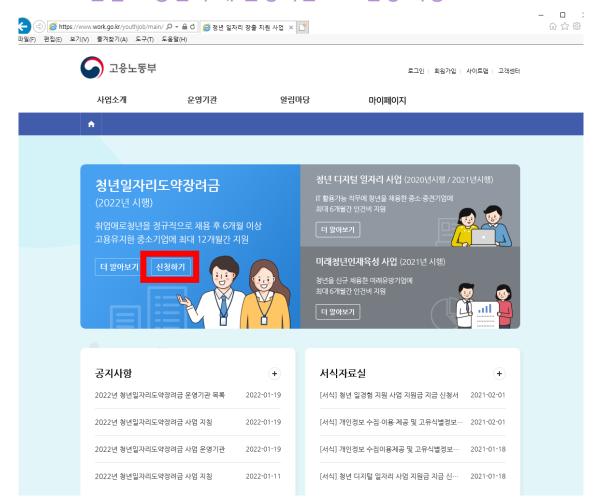




- 1. 기업 참여 신청
- 2. 운영기관: 충북경영자총협회
- 3. 기업 심사 및 승인
- 4. 협약체결
- 5. 채용자 명단 제출
- 6.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7. 지원금 신청
- 8. 지원금 심사
- 9. 지원금 지급

워크넷 신청: www.work.go.kr/youthjob

관할 고용센터 내 운영기관으로 신청 가능



충북청년 미래뉴딜산업 전략프로젝트는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뉴딜산업 및 신(新)성장산업 관련 기업에서

청년(충북도내 19세~ 39세)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지원하는 충청북도 사업으로

기업은 인건비를 최대 2년간(매월 180만원) 지원하고

청년은 인건비 총 200만원과 지역정착금 (급여에 외 별도 매월20만원지급) 및 기타지원과

추가 인센티브(1,000만원(최대, 3년차))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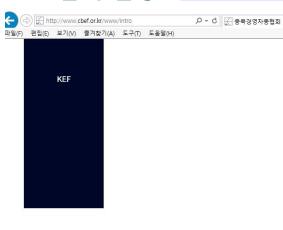
청년취업 02 청년대상 관련전공자, IT분야 전공자 충청북도 내 거주하는 19세~39세미취업 청년 뉴딜산업과 신(新)선장산업분야 기업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 지원분야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기간 청년지원 청년혜택 인건비 외 2022년 3월~2024년 3월(2년) 계속 근로 시 3년차 인센티브 지역정착지원비, 직무향상 교육지원, 자기개발지원비 지원 (2024년 7월~2025년 6월)

(3년차)인센티브 1년 총 1,000만원

(분기별 250만원)

- 1. 충북경총 홈페이지 접속
- 2. 공지사항
-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4. 심사기간 (운영기관)
- 5. 기업매칭 및 면접
- 6. 선정
- 7. 근로시작(3월)
- 8. 급여 정산

참여 신청: www.cbef.or.kr



충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일글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수 약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22 1 1 ~ 2022 12 31 적용

2 = 8

100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1 = 1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채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0 ※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의(단순노무종사자)에 1=0
 -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 0 1 = 0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 ③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6	면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	20%	15%	10%	5%	0% (전부 산입)
	복리 후생비	7%	5%	3%	2%	1%	0% (전부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7)+12월=약 209시간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x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1 914 440%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 (유급주휴시간 포함):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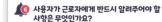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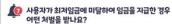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개 아마니느

고경근로시간이 1구 40시간인 근로시기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 명세서

급여계	2,105,000원
상여금	125,000원
시간외수당	130,000원
식대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기본급	1,500,000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100% (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계	1,811,710원
상여금	0원
식대·교통비	161,710원 1
직무수당	150,000원
기본급	1,500,000원

 상여금 125.000원 중 2022년 원 화산액 1,914,440원의 10%(191,444원) 초과금액 ** 식대 * 교통비 200,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38,288원)초과금역



"2021, 11, 19,부터 오쿄 개당 시 오쿄덕세서를 과다며나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고객상담센터 1350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043-271-9805~6
-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43-221-1390~1
- 3. 충북청년 미래뉴딜산업 전략프로젝트 : 043-271-9804

